전라북도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

[시행 2016. 1. 4.] [전라북도교육규칙 제760호, 2016. 1. 4., 일부개정]



전라북도교육청(인성건강과), 063-239-3370

- 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69조제1항 및 제87조제1항에 따라 중·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체육특기자의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96, 8, 9, 98, 8, 13, 2007, 7, 20>
- 제2조(선발의 종목) 중·고등학교 체육특기자 선발 종목은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종목(무용 포함)으로 한다. <개정 2002. 1. 8>
- **제2조의2(입학정원의 배정)** 체육특기자 입학정원의 배정은 교육감(중학교는 교육장)이 그 관할 지역 입학정원의 3% 범위에서 배정한다. <신설 98. 8. 13, 개정 2002. 1. 8, 2016. 1. 4.>
- **제3조(대회의 범위)** ① 중·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로 선발될 수 있는 사람은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 선수 등록 후 1년이 경과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. <개정 98. 8. 13, 2003. 1. 14, 2004. 9. 23, 2016. 1. 4.>
 - 1. 교육부,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시·도교육감이 주최·주관하는 전국규모의 대회 및 동 시·도 규모대회 <개 정 93. 10. 20, 98. 8. 13, 2004. 9. 23, 2016. 1. 4.>
 - 2. 대한체육회 또는 가맹 경기단체가 주최·주관하는 전국규모의 대회 및 시·도 규모의 대회 <개정 2004. 9. 23>
 - 3. 시·도 체육회 또는 이와 그 밖의 단체가 공동주최하는 시·도 및 전국규모의 대회<개정 2016. 1. 4.>
 - ② 무용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에 출전하여 3위 이상 입상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. <개정 2004. 9. 23>
 - 1. 시·도교육감이 주최, 주관하는 시·도 단위 이상의 대회
 - 2. 무용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(교)에서 주최, 주관하는 시·도 단위 이상의 대회<개정 2016. 1. 4.>
 - 3. 공공기관 또는 기타 권위 있는 단체가 주최, 주관한 전국규모대회
- **제4조(입상의 범위)** 무용의 경우에는 2인무 입상을 제외한 군무입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. <개정 97. 8. 20, 2004. 9. 23>
- **제5조(추천 등에 의한 체육특기자)**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에 따라 체육특기자로 인정할 수 있다.<개정 2016. 1. 4.>
 - 1. 시·도교육감이 신체조건, 소질 및 그 밖의 사유로 운동선수로서 장래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 중 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사람
 - 2.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대회에 대비하여 우수한 체육선수를 육성할 목적으로 유망 신인선수로 인정하여 통보한 사람 <개정 93. 10 .20, 98. 8. 13, 2016. 1. 4.>
- **제6조(선발위원회의 설치)** ① 고등학교 체육특기자를 심의 선발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97. 8. 20, 98. 8. 13>
 - 1.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7명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, 부위원장은 인성건강과장으로 하고, 위원은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, 전북체육중·고등학교장, 진로·진학담당장학관, 중등교육과정 담당장학관, 체육·예술교육담당장학관으로 한다. <개정 92. 6. 1, 98. 1. 21, 99. 1. 16, 99. 8. 10, 2002. 2. 27, 2010. 9. 1, 2011.8. 29, 2016. 1. 4.>
 - 2. 위원회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.
 - ② 교육지원청에는 중학교 체육특기자 선발을 위한 중학교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<신설 98. 8. 13, 개정 2003. 1. 14, 2014. 3. 10.>
- 제7조(선발 절차 등) 체육특기자 선발 절차와 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.
- **제8조(전·편입학)** 체육특기자 전·편입학의 경우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73조제2항 및 제89조제3항을 준용한다. <개정 96. 8. 9, 98. 8. 13, 2004. 9. 23, 2007. 7. 20>

부칙< 제760호,2016. 1. 4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